

##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주요내용

### 01 설치개수 및 금지장소

- 각 정당이 행정동별 2개 이하 설치
- 어린이보호구역, 소방시설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설치금지

### 02 설치방법 제한

- 타 현수막, 신호등 안전표시, CCTV를 가리는 방법 금지
-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
- 도로표지, 교통안전표지, 가로등, 전봇대에 현수막 2개 이하 설치
- 교차로, 횡단보도, 버스정류장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.5m 이상,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

### 03 설치규격 준수

- 정당명, 연락처(정당 및 설치업체), 표시기간(15일 이내) 준수
- 현수막 면적 10㎡ 이내 - 글자크기는 5cm이상(세로)

※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2 참고

##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금지광고물

범죄행위

미풍양속위해

청소년보호

사행심유발

인권침해

타법금지

## 대전시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운영

### 동구

연번	장소
1	신흥동 신흥마을@102동 담장
2	가오동 가오고네거리
3	대동 충남중네거리 공원 앞
4	웅전동 동부네거리

### 서구

연번	장소
1	도마1동 도마네거리(서부교육청)
2	관저1동 건양대병원(원앙@)네거리
3	둔산2동 향촌@정문 옆
4	탄방동 공작네거리
5	둔산1동 크로바네거리
6	둔산3동 문정네거리
7	만년동 대덕대학교네거리

### 대덕구

연번	장소
1	중리동 중리네거리
2	송촌동 해피존앞네거리
3	법동 법동네거리
4	오정동 농수산오거리
5	신탄진동 대청대교 네거리

### 중구

연번	장소
1	대사동 보문산공원오거리
2	목동 충남여고 담벽
3	대사동 중대병원네거리
4	대흥동 대고거리(보문산방향)
5	태평동 버드내네거리
6	부사동 충무로네거리
7	산성동 버드내다리 네거리
8	문화동 센트럴파크@201동 앞
9	태평동 버드내마을@동문 옆
10	태평동 삼부스포렉스 옆

### 유성구

연번	장소
1	노은동 노은네거리
2	노은동 노은4단지 공원 앞
3	반석동 반석마을@110동 옆 담장
4	노은동 은구비네거리
5	궁동 충대후문 장대네거리
6	신성동 려키하나@입구 횡단보도
7	관평동 테크노밸리 @613동 앞

※ 신청방법 : (사)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/ www.djsign.kr

[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 문의]



# 옥외광고물

[간판·현수막 등]

바로알기



## 2025년 대전광역시 옥외광고 모범업체

- 경성기획사 635-6080
- 인포인트 824-7031
- 서비스광고 585-1784
- 웅진광고기획 583-1834
- 부광시공기획 624-5121
- 제이투광고기획 545-7600
- 씨원 933-5769
- 엠케이싸인 825-8279
- 모든광고기획 010-2418-1482

# 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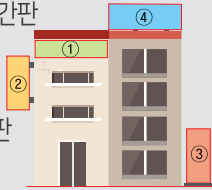
## 01 허가대상

-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
-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벽면이용간판
- 돌출간판, 옥상간판
-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
-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
- 전기 이용 광고물  
(네온류 · 전광류 광고물, 디지털, 광고물, 디지털 홀로그램 등)

※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참고

## 02 신고대상

- 면적 5㎡ 이상인 벽면이용간판
-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
-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, 면적이 1㎡ 미만인 돌출간판
-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
- 입간판, 현수막, 전단 등 유동 광고물



	허가	한변의 길이 10m이상, 4층이상 타사광고
① 벽면간판	신고	면적5㎡ 이상, 4층 이상(허가대상 제외)
	허가·신고X	면적5㎡ 미만, 4층 미만(허가·신고대상 제외)
② 돌출간판	허가	지면~윗부분 높이 5m 이상, 면적 1㎡ 이상
	신고	지면~윗부분 높이 5m 미만, 면적 1㎡ 미만
③ 지주간판	허가	지면~윗부분 높이 4m 이상
	신고	지면~윗부분 높이 4m 미만
④ 옥상간판	허가	모든 옥상 간판

※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참고

## 03 첨부서류

-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신청서 1부
- 토지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
- 표시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
- 광고물의 원색 도안 1부
- 광고물의 모양·규격·재료·디자인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
- 위치도(약도) 및 현황도 1부

# 자연재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

## 0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

- 허가 대상 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지주이용간판, 옥상간판 등

## 02 안전점검 시기

- 최초로 표시한 경우 15일 이내
- 허가·신고 표시기간 연장 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
- 변경(규격·자재·위치 등)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

※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, 제37조 참고

## 03 예방단계(평상시)

- 옥외광고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실시
-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지
- 광고물의 파손여부 및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
- 노후, 균열, 부식 등으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지
-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와 정상작동 하는지

## 04 대비·대응단계(예비특보·태풍/폭설주의보 발효 시)

- 현수막, 입간판, 에어풍선 등 안전한 장소로 철거
-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광고주 자율정비
- 위험여부 지속적으로 확인
-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행 및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 후 소방서, 관할 구청에 신고

## 05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

### 1) 가입대상?

벽보 전단 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 외에는 손해 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(옥외광고대행 사업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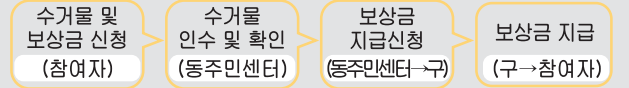
### 2)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?

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, 1억5천만원 이상,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원 이상 (대인기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)

# 불법광고물 없는 대전 만들기

## 01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수거보상제 추진

- 시,구,옥외광고협회 등 시 진입로, 간선도로 등 정비
- 시민들이 직접 수거해온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보상금 지급



## 02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정비

- 월 1~2회 주말 일제정비로 게릴라성 주말 불법현수막 대응

## 03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

-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살포에 따른 자동전화제도 단속

## 04 청정지역 불법현수막 금지

- 주요 교차로 (36개소)에 불법 현수막 근절로 깨끗한 경관 조성

**동구** > 동부네거리, 가양네거리, 대전역네거리, 대동역오거리, 원동네거리, 삼성네거리, 성남네거리, 용전네거리

**중구** > 서대전네거리, 부사오거리, 산성네거리, 태평오거리, 동부교육지원청네거리 (센트럴유치원 앞), 대고오거리

**서구** > 큰마늘네거리, 용문역네거리, 도마네거리, 건양대병원네거리, 안골네거리, 월평역네거리

**유성구** > 유성네거리, 충대정문오거리, 흥반네거리, 구암역삼거리, 미래로네거리, 배울네거리

**대덕구** > 중리네거리, 한남오거리, 오정네거리, 송촌네거리, 읍내네거리, 읍내삼거리, 석봉네거리, 신탄진네거리, 중리동하나로병원교차로, 송촌동행정복지센터교차로

## 05 신고방법

-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'생활불편 - 불법광고물 신고'